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9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박수현·장종태·양문석

박용갑ㆍ서삼석ㆍ임오경

이개호・황 희・조계원

정준호 · 조인철 · 어기구

임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 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

설).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를 "개방·이용 및 공개의 방식 등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 차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하 "체육 시설 이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이용기준에 따라 개방한 체육시설의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
	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
	순위 및 예약절차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
	설 이용 기준(이하 "체육시설
	이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ㆍ
	공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이용기준에 따
	라 개방한 체육시설의 예약 사
	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
	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체	<u>⑤</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	<u>개방·이용 및 공개의</u>

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u>방식 등에</u>
광부령으로 정한다.	